

1. 개정이유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자산형성지원 대상자에 포함토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 제18607호) 됨에 따라 부령으로 위임된 사항 개정

2. 주요내용

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 포괄 규정(제32조의4)

자산형성지원 신청자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대상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포함되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1항 중 “법 제18조의4제5항”을 “법 제18조의8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의”를 “자산형성지원 신청자 및”으로, “근로소득”을 “근로소득, 재산”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① <u>법 제18조의4제5항</u> 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산형성지원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① <u>법 제18조의8제5항</u> ----- -----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u>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u> 의 가구의 사업소득, <u>근로소득</u> 및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자산형성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 ----- <u>자산형성</u> <u>지원 신청자 및</u> ----- ----- ----- <u>근로소득,</u> <u>재산</u>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